

『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쳐 있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
 - 옥계동 14필지 47,483.6㎡ → 산동면 신당리에 편입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

가. 산동면 리간 경계 조정에 따른 「구미시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쳐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